

2019년도 제10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7. 8.(월요일), 16:00
- 장 소 : 보호원 9층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분과위원장 대행), 백대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0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300건(안전번호 제2019-64619호~65466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밴드 게시물 121건(안전번호 제2019-64619호~64713호)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하되, 그 중 게시물에 설정된 직접링크로 연결되는 블로그가 폐쇄된 게시물 50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나머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179건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07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0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9페이지 하단의 문구가 '맞지'인지 '많지'인지 명확하지 않아 확인을 요청함
- A 위원 : 문맥상 '맞지'가 들어가야 할 것임
- B 위원 : 회의록 원안대로 '맞지'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으로 보임
- A 위원 : 그렇다면 회의록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원안대로 공개하자는 의견임
- B 위원 : 동의함
-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64619호~64713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1,300 건임

(보호원에서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64619호~64713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밴드 게시물이 문제가 된 사안임

첫 번째 밴드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이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동일인이 올린 것이며 게시물에는 '구글드라이브'에 저장된 국내 영상저작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가 설정되어 있음

두 번째 밴드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이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동일인이 올린 것이며 게시물에는 국내 영상저작물이 게시된 '블로그'로 연결되는 직접링크가 설정되어 있음

(링크로 연결되는 블로그 화면을 제시하면서)그런데 심의시점 현재 직접링크로 연결된 블로그가 폐쇄되어 있음

세 번째 밴드도 마찬가지로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는 모두 두 명인데, 한명은 밴드 리더이고 다른 이용자는 앞서 본 두 번째 밴드에 심의대상 게시물을 올린 닉네임과 동일한 닉네임을 이용하는 자가 올린 것임

게시물에는 카카오TV에 저장된 영상저작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가

설정되어 있음

-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64619호~6471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밴드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다만 두 번째 밴드 게시물의 경우와 같이 심의시점 현재 게시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자진 삭제하거나 전송 중단한 경우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 본 건과 유사하게 심의시점에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 각 분과심의위원회에서는 자진 시정사항이 확인되면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왔음
금번 심의 안전도 기존 사안들과 다르게 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하자는 의견임
-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 안전번호 제2019-64619호~64713호는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되, 심의시점 현재 직접링크를 설정하여 연결한 블로그가 폐쇄된 경우 불법복제물등이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것으로 보아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64714호~6546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19-64714호~65466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 A 위원 : 단순 불법복제물 전송 건이므로 시정권고 의결을 하되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중단 된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자는 의견임
- B 위원 : 모두 데드 카피이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이며, 심의일 현재 게시물이 이미 삭제된 경우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함
-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64714호~65466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64619호~65466호의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강상욱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10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0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7. 15.

분과위원장 대행 강상욱

위원 백대용